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성 북 구 의 회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이호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0
----------	-----

발의연월일 : 2024년 10월 22일

발의자 : 이호건 의원 외 21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1. 주문

○ 성북구의회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에 대한 생애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약71에서 84사이에 있는 사람으로 장애와 비장애의 중간 영역에 분포함. 경계선지능인은 개념과 정의 조차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조기발견 및 실태파악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인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으로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로 재생산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21대 국회에서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제정되지 못하고 폐기되었고 제22대 국회에는 4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음.

○ 경계선지능인은 어린시절 조기에 발견하여 당사자의 특성에 맞게 치료하고 교육하면 인지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의 부재로 체계적이고 실직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법률로써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책 대상으로써 적절한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함.

3. 건의안: 붙임

4. 이송기관: 국회, 대한민국 정부(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교육부), 전국 지방의회

첨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안). 1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귀하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안)

‘경계선지능인’은 ‘느린학습자’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IQ)71~84 지능지수 사이에 해당하면서 인지·정서·사회 적응 능력이 낮은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국가통계가 없으며, 미국 국립보건원 기준에 따라 전체인구의 13.6%인 약 697만명으로 추정할 뿐이다.

경계선지능인은 의사소통을 비롯한 일상생활에 있어 비장애인과 확연한 차이가 없지만, 학습이나 사회생활에서 비장애인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개념과 정의조차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경계선지능인은 어린시절 조기에 발견하여 당사자의 특성에 맞게 치료하고 교육하면 인지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의 부재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한 조기개입의 부재로 경계선지능인은 학령기에 학습 및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좌절감과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거나 학습된 무기력이 심화된다. 성인기에 접어들면 구직이 어렵고 직무활동을 시작하더라도 부적응으로 지속적인 근로가 힘들어 자립이 쉽지 않다. 이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초기의 적절한 지원의 부재는 생애전반에 누적적 결손을 유발하고 고립·은둔 등 사회와의 단절로 이어져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로 재생산되고 범죄에도 쉽게 노출된다. 이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더욱 증가시키며 핵심 경제활동 인구로 활용가능 한 인적자원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제도 등 공적 지원이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에서 경계선지능인의 치료와 교육 등을 위한 비용은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2020년 10월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4년 4월 기준 93개의 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등을 추진 중이다. 상위법이 부재한 상황임에도 조례가 빠른 속도로 제정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관심과 필요도가 높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다양한 형태로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및 시범사업들이 있지만 법적 정의 없이 모호한 개념 아래 시행되는 각 지자체의 지원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상 생애전반에 이뤄져야 하는 교육과 지원 등이 미시적이고 단편적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국가적 제도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 각종 지원, 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4건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관계 부처와 단체들의 의견에 부딪혀 계류되다가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되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경계선지능인이 권리를 보장받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4건 발의되었다.

이에, 우리 성북구의회는 국가적 지원 체계의 부재 속에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과 양육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가결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경계선지능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 할 것을 촉구한다.

2024. 1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